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836

발의연월일: 2021. 6. 17.

발 의 자: 김승수・곽상도・金炳旭

김상훈 • 김영식 • 김정재

김형동ㆍ서일준ㆍ이 영

이채익 · 주호영 · 지성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전국 문화시설 통계에 따르면, 박물관, 미술관,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별로 편차가심할 뿐만 아니라,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그리고 지방도시간 문화 향유 기회의 불균형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.

하지만 정부가 문화와 관련하여 최상위 개념으로 수립하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 육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었어 지역 간 문화 양극화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전국의 고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함(안 제8조제3항제11호).

법률 제 호

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)	제8조(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)
① ~ ② (생 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③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1.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
	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
	<u>관한 사항</u>
<u>11.</u> (생 략)	<u>12.</u> (현행 제11호와 같음)